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62
------------	------

발의연월일 : 2017. 9. 4.

발 의 자 : 진선미 · 권미혁 · 서영교

신창현 · 홍의락 · 정인화

강병원 · 박주민 · 이재정

박남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설로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정을 개설하는 전통문화교육원이 있지만, 관련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만을 제시하고 있음.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져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의 책무가 있음.

이에 한국전통문화교육원에 시민들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두고,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수도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분야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교육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시민들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둔다.
- ④ 제3항의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은 시민들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수도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4조(전통문화전문과정)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u></p> <p><u>② 전통문화전문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u></p> <p><u>③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u></p>	<p><u>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분야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교육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u></p> <p><u>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u></p> <p><u>③ 전통문화교육원에 시민들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둔다.</u></p> <p><u>④ 제3항의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은 시민들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수도권에 설치하여야 한다.</u></p> <p><u>⑤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u></p>